

문서확인번호 2170-0532-4759-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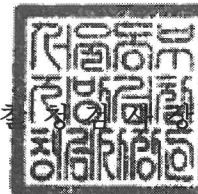
발행번호 2-211-2023-12957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화번호 1301)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23. 11. 21.



수신 변호사이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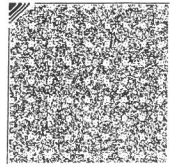
발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20896호
② 고소(발)인성명		
피의자 [피고소(발인)]	③ 성명	김진석
	④ 주민등록번호	930706-1*****
⑤ 죄명		가.준강간
⑥ 처분검사		김은정
⑦ 처분년월일		2023. 11. 15.
⑧ 처분요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기소이유		별지 참조
⑩ 비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 11. 15.

사건번호 2023년 형제20896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은정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김진석

II. 죄 명 준강간

III.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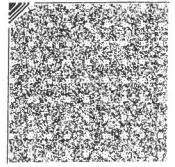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피의사실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송치결정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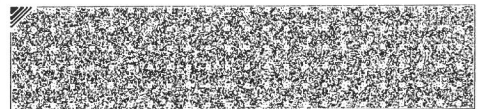
- 2023. 3. 4.경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체육관 코치인 피의자를 비롯한 회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2023. 3. 3. 23:30경 피의자의 제안으로 장소를 옮겨 단들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집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나체상태로 피의자와 단들이 누워있었고, 피의자와 성관계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의자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가 호감표시를 하면서 체육관 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단들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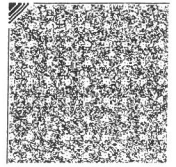




취해 넘어져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점을 나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주변에 내렸고, 이후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도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괜찮은지 확인한 후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겁나요. 진짜 같겨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 극구 부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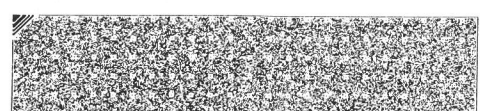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또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협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여(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검토해보건대,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① 주점 운영자인 참고인 장○○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올 때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알콜도수 14.5인 사케를 마시다가 2023. 3. 4. 02:00경 피해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되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2번 정도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같은 날 02:15경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나갔다고 진술한 점(제2권 73쪽 진술서) ② 택시이용상세(제36~38쪽) 및 CCTV영상(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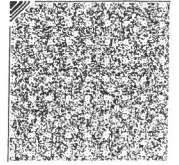




104~107쪽 수사보고 및 CD)에 의하면 같은 날 02:57경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오금역 4번출구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가 같은 날 03:09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그곳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의자 제출 녹음파일(제2권 96, 97쪽 녹취록, 103쪽 CD)에 의하면, 같은 날 03:32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라고 묻자, 피해자가 “뭐가 섹스가?”라고 답하여 피의자가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못해요? 못하나 보네.”라는 말을 반복하여 피의자가 “난 진짜 기회 있으면 전 바로 해요. 진짜 할 수 있어? 본인 입으로 얘기해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하자.”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도 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1권 19쪽 진술조서), ④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제2권 251쪽)에 의하면 같은 날 00:42경부터 01:15경까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피의자가 할 말이 있어서 단들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같은 날 01:53경부터 피해자가 답장하지 못한 점, ⑤ 위 녹취파일 대화내용은 기억나지 않고 성관계 동의를 있었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 “기억이 잘 안 나서 진술할 게 없어요.”라는 피해자의 일부진술(제1권 19쪽, 2권 61쪽 진술조서), ⑥ 피해자에게서 달리 수면제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점(기록 제121쪽 감정서)이 확인되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3. 3. 4. 02:00경 무렵부터 혈중알콜농도 상승으로 술에 취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9분이 경과한 같은 날 03:09경 귀가할 때까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귀가 무렵 피해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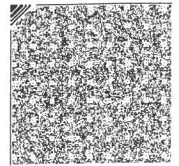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시간인 같은 날 03:32경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주제로 대화를 한 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의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반이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알콜이 임시 기억 저장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검사

(인)





의견서

1. 피의자 인적사항

김진석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2.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 범죄사실

피의자와 피해자 권*정(26세, 여)은 체육관 코치와 회원의 관계이다.

피의자는 2023. 3. 4. 03:32경 서울 송파로 송이로17길 46-17 304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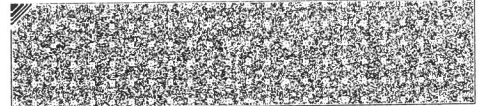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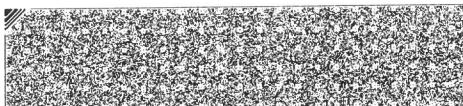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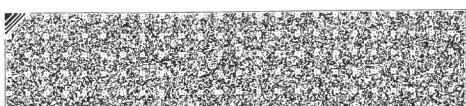
4. 적용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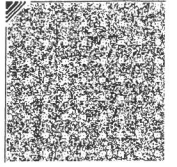
5. 증거관계

6. 수사결과 및 의견

2023. 6. 20.

서울송파경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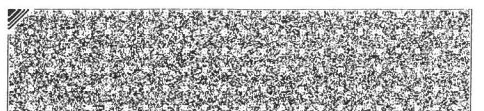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검찰-2023-211-11710-BDD00286041377



2023-11-21

2 / 2